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



이성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지난 6월 9일(금) 우리회에서 개최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하여 이성도사무관님께서 강의하신 자료 중 반려동물 보호자(소유자)들에게 안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한 원고입니다.

공동주택내의 동물사육이나 공공장소 출입, 동물을 동반한 대중교통 이용 등 보호자들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가?



현실적인 문제로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될 강아지를 어디서 구할 것인지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위의 전문가나 가까운 동물병원의 수의사와 먼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개 강아지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는 첫 16주간이라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사육되어진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성이 있습니다. 처음 구입하거나 분양받거나 기증받은 강아지는 수의사에게 건강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기생충 구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 성격이 형성되는 16주간은 조심해서 사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강아지가 인간과 가장 친밀해지기 쉬운 시기는 어릴 때(7~12주)이므로 이때는 정성과 사랑으로 다루어야 하며, 여러분의 가족 일원인 강아지의 성격은 이 때에 여러분의 성격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강아지의 일반적인 선택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눈과 코의 분

비물이 없어야 하며, 털에 손상이 없고 모질에 윤기가 흐르며,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이 없어야 하고, 잇몸은 분홍색이어야 하며, 기침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우호적이면서 당신의 관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강아지가 무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아지를 인수받을 때에는 강아지의 병력, 현재의 상태나 예방접종 여부, 구충 여부 등을 확실히 인정하는 수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강아지를 집에 데려온 후에는 강아지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침실과 음식물이 준비되어야 하며, 처음 집에 온 강아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낯선 거인들과 접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로 배려하여야 합니다. 처음 음식물 급여는 그 전에 먹이는 음식을 급여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뜨리거나 때리거나 하여 심한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공동주택내에서 생활하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제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행위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와 냄새 등으로 인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웃과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를 기르는 입주자에게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려 하거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육을 금지하도록 일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우리나라의 주택현황 중 공동으로 모여 사는 형태의 주택이 60%이상이 해당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 등의 사육금지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 공원, 공공장소 출입하기

공공장소에서 개 등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들의 배설물 처리문제와 개가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을 경우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리공원 등에 개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

침을 내리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일치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애견인 및 일반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인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행위를 공단 직원이나 시 · 도 소속 공무원이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의 3번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로 법 제49조제1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위반 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놀이터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서 개회충 알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애완동물의 어린이놀이터에의 출입제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2002년 9월 어린이놀이터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렸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 동물원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의 경우는 도시공원법 및 서울대공원 동물원관리지침에 따라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이유로 동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5) 대중음식점,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 상점

일반적으로 법에서 대중음식점, 백화점 및 상점의 출입을 금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식품유통 업체장 등에서는 객장의 지침에 따라 애완견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식품구매를 할 동안 입구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음식점의 경우도 대부분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애견이 출입할 수 있는 애견 Cafe 가 신종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부 상점에서는 애완견의 출입금지표를 붙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숙박시설의 경우 각각의 경우가 다르나 애완견의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라도 개와 함께 엘리베이터 탑승함으로써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1~2층을 배정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애완동물의 교통수단이용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법에 규정된 바는 없고, 다만 각 교통수단별로 자체적으로 운송규정에서 고객 불편 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승객과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1) 시내버스의 이용

舊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서 동물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했을 시 운전자가 탑승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現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 제3호에 의하면 동물은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금지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객의 금지행위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1조 제8호는 애완용 등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장 또는 가방을 사용한 애완용의 소동물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할 경우 운수사업법에 의거 법규 위반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8번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 지하철, 도시철도,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5조제1항제4호는 여객이 동물(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용 동물로서 용기에 넣어 휴대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4의 5번에서 운수종사자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편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철도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8번에 따라 운수종사자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상 지하철에서는 개, 고양이 등의 동승이 불가능하고, 기차의 경우 동승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비행기 이용

항공사마다 그 규정이 다를 수 있겠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여객기로 운송하는 애완동물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하며, 토끼, 햄스터(설치류), 거북이, 뱀(파충류), 돼지, 병아리(가축) 등은 항공기와 고객의 안전상 모두 운송이 불가능한 종류입니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공격적 성향이 강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룯트와일러(Rottweiler), 도베르만(Dobermann) 및 투견 등 일부 견종은 여객기로의 운송은 제한되며, 제한되는 종류의 동물 운송은 화물로 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건강해야 하며 생후 최소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약물 사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투여했거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공격적인 동물은 운송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은 사이즈가 작고 가벼우면 기내로, 그보다 크면 전용 화물칸으로 탑재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항공기 공간을 고려하여 승객 1인당 1마리에 한합니다. 단 아주 작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혹은 고양이 2마리는 한 우리에 넣어 운송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승객 1인이 1마리는 기내로 1마리는 화물칸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기종별로도 애완동물 운송 가능 마릿수가 정해져 있으며, 최근 애완동물의 동반수송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기종에 상관없이 2마리로 제한해 오던 애완동물 반입 제한 폭을 기종에 따라 최대 6마리(B747-400)까지 확대하였고 화물칸으로는 4마리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3~5킬로그램 정도의 작은 강아지 정도가 기내에 운반 가능하며 좀더 큰 애완동물은 온도와 공기의 유입 장치가 있는 화물칸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먼저 기내 반입하는 애완동물은 고객님의 앞좌석 밑

에 두어야 하므로 (애완동물을 포함한) 케이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 115cm(높이가 20cm~22cm 정도) 이하, 무게가 5kg 이하라야 운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짐칸으로 실리는 애완동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련된 것인데요. 항공기의 화물칸은 문을 열고 그 통로를 통해 짐을 싣고 내립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담은 케이지가 그 높이를 초과하면 싣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그 높이가 33인치 (86~88cm)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애완동물 운송 용기(케이지)의 크기는 세변의 합이 246cm 이하이고, 애완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의 합이 32kg 이하가 적합합니다.

운송서류로는 국내선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나 국제선의 경우 광견병예방접종확인서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 공항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증명서를 받을 경우 동반 운송이 가능합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은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하여야 하며, 이는 면역형성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30일이 경과한 경우 입국 당일 바로 공항에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과 해외로 나갈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동물반입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서는 자국내 동물반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동물과 함께 출국하거나 입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 뿐만아니라 국제공항이나 국제항에 상주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관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4) 자동차 운전의 경우

자동차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